

민원 관련 추진내용 및 향후 해소계획

1. 민원개요

- 민 원 인 : [REDACTED]
- 민원요지 : '곤지암 쿠팡1센터 지하1층 중층의 적법 여부'에 대한 재조사 요청(건축법 관련)
- 민원내용
 - 2025년 6월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곤지암 쿠팡1센터(곤지암읍 열미리 416-3) 지하1층 중층의 적법 여부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하였음.
 - 곤지암읍 담당자는 해당 중층은 적층식 랙에 해당되므로, 건축법 상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위법 사항이 없다고 답변함.
 - 그러나, 적층식 랙을 물류 업무 수행이 아닌 타 용도(사람이 상주하여 작업장으로 사용)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층식 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.
 - 해당 중층(적층식 랙)의 적법 여부에 대해 면밀히 재조사후 관련 조치를 이행해주기 바람.

※ 최초 민원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및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등 기재

가. 추진경위

- 2025.04.14. : 곤지암읍 문서(감사담당관-3690) 수신
- 2025.04.15. : 위반건축물 현장 확인
- 2025.04.17. :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
- 2025.05.27. : 건축주 의견제출에 따라 재검토 후 위반사항 종결통지
- 2025.06.25. :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(적층식 랙 관련 불법 여부)

나. 내 용

- 지하1층 적층식랙 건축법 위반여부 (곤지암읍 열미리 416-3)

2. 민원 내용의 사실여부 및 검토의견 등

가. 지하1층 적층식 랙 건축법 위반 여부

- ① 해당 번지 건축물 내 적층식 랙의 경우 상급기관(국토교통부) 질의회신 등에 따라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(포장,해체,재포장)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(장치)로 사용하고 있고, 기존 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 되는 구조로 볼 수 없으므로,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제외에 따라 불법건축물이 아니며, 그 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층식 랙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.

3. 민원해소를 위한 향후 조치계획 등

- 반복민원 사항으로 민원종결처리 검토
-
-
-

2025. 7. .

확인자	곤지암읍장	성명 : [REDACTED]	연락처 : 행정 [REDACTED]
검토자	개발팀장	성명 : [REDACTED]	연락처 : 행정 [REDACTED]
작성자	주무관	성명 : [REDACTED]	연락처 : 행정 [REDACTED]